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인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82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6일

발 의 자 : 김인호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춘례, 김제리, 문병훈,
노승재, 경만선, 최영주,
황규복, 김호진, 오한아
의원 (9명)

1. 제안이유

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9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 지역관광협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관광산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지역 관광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시장은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협회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.(안 제16조의2제1항)
- 나. 시장은 협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다고 규정함.(안 제16조의2제3항)
- 다. 협회의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함.(안 제16조의2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
「경기도 관광진흥 조례」
「세종특별자치시 관광진흥 조례」
「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」
「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」
「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)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
2. 자치구 관광협의회와 상호 협력
3. 시의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·협력
4. 그 밖에 시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

③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의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6조의2(서울특별시 관광협회의 설립 등)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</u> <u>2. 자치구 관광협의회와 상호 협력</u> <u>3. 시의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·협력</u> <u>4. 그 밖에 시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</u> <p><u>③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협의회의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의2(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)를 신설하는 내용으로, 동 조례안 제16조의2제3항 ‘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’ 라고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하나,
- 동 조례안 제16조의2제4항 ‘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’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(제3조제1항제2호)
- ‘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’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정한섭

분석관(주무관) 박인근

☎ 02-2180-7934

e-mail : yab0217@seoul.go.kr